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고, 기상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감축하며, 지역별 영향예보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기상청 정원 중 운전직 1명(8급 1명)과 방호직 1명(9급 1명)의 직렬을 각각 행정·기술직 2명(8급 1명, 9급 1명)으로 변경하고, 기상청 정원 1명(5급 1명)을 지방기상청으로, 지방기상청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기상청으로 상호 이체하며, 상위법령과의 연계 강화를 위하여 분장사무의 일부 용어를 통일하고 교육훈련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상기후인재개발원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6. 9. ~ 6.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제3호 및 제4호 중 “응용특화기상”을 각각 “융합특화기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응용특화기상정보”를 “융합특화기상정보”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응용특화기상”을 “융합특화기상”으로 한다.

제10조의2제3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8호를 삭제한다.

10의2. 교육훈련기관 및 위탁기관 지정·관리

제11조제2항 중 “방송통신사무관으로, 기후서비스과장은”을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하며, 대전지방기상청 및 대구지방기상청의 기후서비스과장은 각각”으로, “보한다”를 “보하고, 제주지방기상청의 기후서비스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주지방기상청의 기후서비스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운영하는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단서 중 “7퍼센트”를 “10퍼센트”로 한다.

제1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7퍼센트”를 각각 “10퍼센트”로 한다.

별표 3 중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2”를 “13”으로 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79”를 “78”로 하며,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5”를 “36”으로 하고, “운전서기 1”를 삭제하며,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2”를 “23”으로 하고, 방호서기보 “4”를 “3”으로 한다.

별표 4 중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2”를 “13”으로 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3”을 “82”로 하며,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3”을 “34”로 하고, “운전서기 1”를 삭제하며,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1”을 “22”로 하고, 방호서기보 “4”를 “3”으로 한다.

별표 6 중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을 “2”로 하고, 행정

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5”를 “36”으로 한다.

별표 7 중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3”을 “2”로 하고,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1”을 “52”로 한다.

환경부령 제1014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 4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은 2026년 3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기상서비스진흥국) ① ~ ⑥ (생략)	제9조(기상서비스진흥국)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기상융합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응용특화기상</u> (생활·농림·산업·생명·교통안전 등)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종합·조정	3. <u>융합특화기상</u> ----- ----- -----
4. <u>응용특화기상</u> (생활·농림·산업·생명·교통안전 등)에 대한 정보생산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 <u>융합특화기상</u> ----- ----- -----
5.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및 <u>응용특화기상정보</u> 생산 시스템의 운영	5. ----- --- <u>융합특화기상정보</u> ---- -----
6. 기상기후 빅데이터, <u>응용특화기상</u> 및 지역 맞춤형 서비스 관련 대외협력	6. ----- <u>융합특화기상</u> ----- -----
7. 8. (생략)	7. 8.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기상기후인재개발원) ①·② (생략)	제10조의2(기상기후인재개발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지방기상청의 예보과장은 각각	-----
<u><신설></u>	<u>10의2. 교육훈련기관 및 위탁기</u>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수석	-----
	<u>관 지정·관리</u>	전문관으로 보하며, 제주지방기	-----
11. (생략)	11. (현행과 같음)	상청의 예보과장은 서기관·기	-----
④ 인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④ -----	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	-----
분장한다.	-----.	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 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	-----
<u>8. 교육훈련기관 및 위탁기관</u>	<u><삭제></u>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고,	-----
<u>지정·관리</u>		대전지방기상청·대구지방기상	-----
9. ~ 11. (생략)	9. ~ 11. (현행과 같음)	청 및 제주지방기상청의 관측과	-----
제11조(지방기상청) ① (생략)	제11조(지방기상청) ① (현행과	장은 각각 행정사무관·공업사	-----
	같음)	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	-----
② 지방기상청에 기획운영과·	② -----	· 전산사무관 또는 <u>방송통신사</u>	----- <u>무관으로 보하며, 대전지방기상</u>
예보과·관측과 및 기후서비스	-----	무관으로, 기후서비스과장은 서	<u>청 및 대구지방기상청의 기후서</u>
과를 두되, 지방기상청의 기획	-----	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u>비스과장은 각각</u> -----
운영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	-----	· 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	-----
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	-----	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	-----
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	-----	송통신사무관으로 <u>보한다.</u> <u><단</u>	----- <u>보하고, 제주</u>
사무관으로 보하고, 수도권기상	-----	<u>서 신설></u>	<u>지방기상청의 기후서비스과장</u>
청·부산지방기상청·광주지방	-----		<u>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u>
기상청 및 강원지방기상청의 예	-----		<u>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u>
보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	-----		<u>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u>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며,	-----		<u>로 보한다. 다만, 제주지방기상</u>
관측과장 및 기후서비스과장은	-----		<u>청의 기후서비스과장은 「행정</u>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	-----		<u>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u>
하고, 대전지방기상청 및 대구	-----		<u>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u>

환경부령 제1014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환경부령 제1014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 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 로 증원되는 별표 4의 정원 1명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 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 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 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 한다.	<삭 제>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3]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2	13	+1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79	78	-1
·	·	·	
·	·	·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35	36	+1
운전서기	1	<삭 제>	-1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기상 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 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22</u>	<u>23</u>	+1
·	·	·	
망호서기보	<u>4</u>	<u>3</u>	-1
·	·	·	
·	·	·	

[별표 4]

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 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 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12</u>	<u>13</u>	+1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 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 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83</u>	<u>82</u>	-1
·	·	·	
·	·	·	
행정서기·공업서기·기상서기 ·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u>33</u>	<u>34</u>	+1
운전서기	<u>1</u>	<삭 제>	-1

행정서기보 · 공업서기보 · 기상 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 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21</u>	<u>22</u>	+1
·	·	·	
망호서기보	<u>4</u>	<u>3</u>	-1
·	·	·	
·	·	·	

[별표 6]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 관 · 공업사무관 · 기상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3</u>	<u>2</u>	-1
·	·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기상 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 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35</u>	<u>36</u>	+1
·	·	·	
·	·	·	

[별표 7]

지방기상청 공무원 정원표(제17조제3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3</u>	<u>2</u>	-1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기상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51</u>	<u>52</u>	+1
·	·	·	
·	·	·	